



제1722호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017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
- 공 고 제 2024 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람 공고 생 활 경 제 과 6
- 공 고 제 2038 호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제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인조잔디구장)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체 육 진 흥 과 9
- 공 고 제 2039 호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11
- 보 건 소 공 고 제 200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137
- 보 건 소 공 고 제 2026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138
- 보 건 소 공 고 제 202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139
- 보 건 소 공 고 제 203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140

고 시

- 고 시 제 123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141
- 고 시 제 125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 시 재 생 과 143
- 고 시 제 126 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 시 재 생 과 145
- 고 시 제 12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6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77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201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남동구청장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84명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2. 11. 7. ~ 2022. 11. 22.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경과 후 개선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절차로 진행됩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032-453-2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시정조치(개선명령) 통지서 9, 10월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87조1142	임*순	2022.09.13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번길 **, ***호(간석동, 에**린)
2	66조5385	이*식	2022.09.13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아파트)
3	58보9056	김*옥	2022.09.13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4	67우7351	이*한	2022.09.13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5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트)
5	인천83바4940	김*운	2022.09.13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후부안전판)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호(간석동, 우**을*)
6	20로7049	최*남	2022.09.13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불법가이드)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드**텔)
7	88너3271	김*환	2022.09.13 폐문부재	미인증 등화 설치	215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8	39수7768	성*수	2022.09.13 폐문부재	후등화 개조	2159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9	인천남동파3371	정*현	2022.09.13 폐문부재	등화착색(전조등)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간석동, 동**슬)
10	69오7307	정*관	2022.09.13 폐문부재	번호등 색	215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호(만수동, **빌라)
11	50두2120	곽*옥	2022.09.19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우측제 동등)	216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논현동, 논**아)
12	32무7880	유*아	2022.09.19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호(만수동, **빌라)
13	87도0663	임*춘	2022.09.19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좌측제 동등)	215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포**)
14	12노4101	신*희	2022.09.13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67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동 ***호(논현동, **아파트)
15	25주9868	조*준	2022.09.23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번호등, 좌측제동등)	21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호(만수동, **아파트)
16	06수3741	K***I K*****H	2022.09.23 폐문부재	봉인탈락	216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번지 **빌라 ***호
17	36다8975	김*자	2022.09.23 폐문부재	번호판 상태 불량	215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 (구월동)
18	인천99아4615	조*문	2022.09.23 폐문부재	번호판 꺾임	215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호(만수동, 캐**)
19	96로8856	(주)아**** **드	2022.09.20 수취인불명	번호판 가림(끈)	215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간석동, 금**자)
20	58더1657	백*섭	2022.09.23 폐문부재	점멸등작장치 설치	215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트)
21	53고4077	태*오	2022.09.23 폐문부재	점멸등작장치 설치	216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번길 **, ***호(논현동)
22	327조9147	이*민	2022.09.23 폐문부재	엠블럼 조명 설치	215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동 ***호(간석동, 리**워)
24	86도4762	(주)***엔씨	2022.09.27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간석동)
25	96머8627	세** 농***법인 주식회사	2022.09.29 수취인불명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6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호(남촌동)
26	85오0819	이*수	2022.09.27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5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동 ****호(구월동, 구**이)
27	53서3505	최*철	2022.09.30 폐문부재	후등화 개조	215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간석동, 동**)
28	인천남동타3762	이*철	2022.09.30 폐문부재	미인증LED설치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동 ***호(간석동, **아파트)

29	인천남동타5708	이*영	2022.09.30 폐문부재	미인증LED설치	215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30	326더5642	장*경	2022.09.30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자전거 캐리어)	216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논현동, 소**아)
31	18모1313	백*수	2022.10.11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 (스티커)	216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 ***동 ***호(도림동, 도***단지아파트)
32	울산중파2829	안*애	2022.10.11 폐문부재	미인증LED설치	216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호(논현동, 인**)
33	인천부평자2883	구*용	2022.10.07 수취인불명	미인증LED설치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간석동, 크**딩)
34	32저9160	정*현	2022.10.11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6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에**아파트)
35	09무0222	김*희	2022.10.11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미등)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 *동 ***호(간석동, **아파트)
36	13주2073	전*정	2022.10.07 수취인불명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38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 *동 ***호(만수동, **빌라)
37	인천계양아1366	백*우	2022.10.14 폐문부재	미인증LED설치	21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호(만수동, **빌라)
38	80고7456	이*분	2022.10.17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발판)	215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39	126루2761	정*진	2022.10.14 이사불명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63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아파트)
40	92어4950	강*인	2022.10.17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68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동 ***호(논현동, 에**아파트)
41	34수8291	한*일	2022.10.17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5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구월동, 인**)
42	48우5990	김*환	2022.10.17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후미등)	2159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만수동, 담**아파트)
43	33주1079	김*화	2022.10.25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층(간석동)
44	47노5329	이*진	2022.10.25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서창동, 서**아파트)
45	12마3208	안*혁	2022.10.25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5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가동 ***호(만수동, 초**)
46	345서2548	배*기	2022.10.17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번호등)	21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47	89어6508	임*모	2022.10.24 이사불명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호(간석동)
48	55버4962	이*아	2022.10.24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자전거 캐리어)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나**텔)
49	69오7307	정*관	2022.10.24 폐문부재	번호등 색 개조	215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호(만수동, **빌라)
50	80마8391	가***경(주)	2022.10.21 수취인불명	주행중 작업등 점등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번지 산업용품상가 *---*,
51	73누5013	사*법인 한***연맹	2022.10.28 주소불명	등화장치불량 (번호등)	215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호(간석동)
52	85부0640	김*화	2022.10.31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6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논현동, 어**아파트)
53	264부7538	한*관	2022.10.31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번호등)	215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나동 ***호(구월동, **아파트)
54	81나6999	김*우	2022.10.31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 *동 ***호(간석동, **아파트)
55	91루1344	박*재	2022.10.31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6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번길 **, ***동 ***호(논현동, 가**티 하**)
56	22다9878	강*구	2022.10.31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번호등)	21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만수동)
57	82보8295	차*홍	2022.10.31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5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58	66루1564	한***팅(주)	2022.10.31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698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 남동공단***블럭 *롯데(고잔동)

59	91조6295	차*만	2022.10.31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9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호, ***동 ***호(만수동, 삼**아파트)
60	85라5236	주식회사 한**건	2022.10.28 폐문부재	번호판 꺾임	215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층 ***호(간석동, 미**텔)
61	인천미추홀파8964	김*오	2022.10.28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5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62	경기남양주하5675	문*태	2022.10.28 폐문부재	미인증LED설치	21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번길 ****, ***동 ***호(서창동)
63	175더5846	허*철	2022.10.28 폐문부재	점멸동작장치 설치	215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간석동, **빌딩)
64	80마8277	가***경(주)	2022.10.27 수취인불명	주행중 작업등 점등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번지 산업용품상가 *~~~
65	인천남동카8660	노*재	2022.10.28 폐문부재	미인증 등화 설치(측면, 번호판위)	215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동 ***호(구월동, 구**트)
66	인천부평아4406	주*영	2022.11.04 폐문부재	미인증LED설치	21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67	인천동다7501	고*호	2022.11.04 폐문부재	미인증LED설치	2156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호(구월동, 월**)
68	70루1596	김*례	2022.11.04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종이)	216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번길 *(남촌동)
69	인천남동파4502	이*재	2022.11.04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 ****동 ***호(서창동, 인**린)
70	45구9018	이*희	2022.11.04 폐문부재	번호판 훼손	21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 ***호(서창동)
71	36두2340	이*성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번길 ****, ***호(구월동)
72	84수9102	김*분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구월동, **아파트)
73	02무9336	이*희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호(구월동, 굿**)
74	67우1016	박*라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0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호(간석동, 리**차)
75	인천32바1654	부*찬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번호등)	215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롯데**)
76	87무3679	김*경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미등)	216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 ***동 ***호(논현동, 새**리)
77	29두1661	박*남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리**워)
78	07고5400	이*우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번호등)	2156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구월동, 롯데**)
79	65여4417	임*영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동 ***호(간석동, 어**아파트)
80	86여8512	박*환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파손)	21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서창동, 인***단지)
81	30버5066	장*필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호(간석동, 효**)
82	10나7306	장*애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번호등)	216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동 ***호(논현동, 에**아파트)
83	34로1248	김*인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번호등)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84	93루0257	정*모	2022.11.04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파손)	2150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원대로 ***, ***동 ***호(간석동, 신**텔)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 - 2024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람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2(2005.01.11)호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으로 선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0(2009.12.21)호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변경) 고시되어, 남동구 고시 제2013-67(2013.7.29.)호[사업시행 인가 고시] 및 남동구 고시 제2018-51(2018.04.20.)호[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로 고시된 『만수 종합 쇼핑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관계 서류의 공람)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토지 소유자 및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람하오니,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7.

남 동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2년 11월 7일 ~ 2022년 11월 21일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가.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032)453-2662)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변경)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 업 명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일원 11필지(만수동72-46번지 외 10필지)
 2) 면 적 : 7,227㎡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선화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2층(만수동,만수쇼핑)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있음)

- 시행기간 : (기정) **인가고시일로부터 ~ 2022. 11. 28**
(변경) 인가고시일로부터 ~ 2026. 3. 28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업 명	대지면적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7,227.0㎡	근린 및 판매시설	69.53%	381.8%	41.7m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	-	임대 (-세대)
-㎡	-	분양 (-세대)
-계	-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정 비 기 반 시 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에 무상양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	도 로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 사업조합	해당사항 없음
	공 원	-	주 차 장	-		
	합 계	-	합 계	-		

5. 기타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공람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으며, 본 공고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문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 032)453-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건 제 출 서

① 정비사업 명칭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②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72-46번지 외 10필지		
③ 의견 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일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 - 2038호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제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인조잔디구장)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제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인조잔디구장)에 신규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 위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1.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2022년 공공체육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중 CCTV 추가 설치
2. 시 행 청 : 남동구청
3. 설치장소

연 번	위 치	설치대수
1	제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인조잔디구장	3

4. 예고기간 : 2022. 11. 11.(금) ~ 2022. 11. 30.(수)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장소 :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층 체육진흥과))

6. 문의사항 :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032-453-628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2039 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총 무 과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관 광 과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 화 관 광 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세 무 1 과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정 책 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복 지 정 책 과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노 인 장 애 인 과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동 복 지 과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 육 정 책 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	도 시 재 생 과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 강 증 진 과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기 획 예 산 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기 획 예 산 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 획 예 산 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 획 예 산 과
2023년도 예산안	기 획 예 산 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 무 1 과

2022년 11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9.(월)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세무1과)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복지정책과)
-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노인장애인과)
-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복지과)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
(도시재생과)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강증진과)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90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 제6조)
-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
(안 제11조 ~ 제23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9조 및 제11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터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7조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 조례안」 (행정안전부, 2022. 9. 16.)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동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남

동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남동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남동구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남동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남동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남동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위원회 개최 시 실비보상 금액
- 시행 첫 해 답례품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면서,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최민영

[참고자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시행령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

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 ○○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참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선정위원회는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6.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

용한다.

제3조(답레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답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레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레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레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00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00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00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00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1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레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레품 및 답레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레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레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OO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OO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

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000과장
2. 기금출납원: 000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00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91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구립예술단 단원의 구성과 위, 해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역 문화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구립예술단(풍물단)에 직책을 신설하여 예술단 단원의 기량을 증진하고자 함
- 구립예술단의 위탁관리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풍물단 구성에 훈련장 직책 추가 : (안 제24조제3항)
- 안 제24조제3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안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4항, 제28조제1호, 제29조제2항)
- 훈련장의 직무 신설 : (안 제26조)
- 구립예술단 단원의 해촉 기준 명료화 : (안 제28조)
- 구립예술단 위탁관리 조항 보완 : (안 제30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예술감독 1명,”을 “예술감독 1명, 훈련장 1명,”으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지휘자 및 반주자는”을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휘자”를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시”로 한다.

③ 훈련장은 단원 연습 및 개인 기술을 지도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반주자는”을 “반주자, 훈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주자”를 “반주자, 훈련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반주자”를 “반주자, 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술단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29조제2항 중 “반주자”를 “반주자, 훈련장”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술단의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재단의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그 밖의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을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구성) ①·② (생략)	제2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여성합창단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풍물단은 <u>예술감독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u>	③ ----- ----- ----- ----- <u>예술감독 1명, 훈련장 1명, -----</u> -----.
제2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 또는 <u>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u>	제25조(단원의 자격) ----- ----- ----- ----- ----- <u>지휘자, 반주자, 훈련장은</u> ----- -----.
제26조(단장과 단원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술감독 및 <u>지휘자</u> ,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6조(단장과 단원의 직무) ① ----- ----- ----- <u>지휘자, 반주자, 훈련장</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훈련장은 단원 연습 및 개인 기술을 지도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수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	⑤ ----- ----- <u>필요시</u> ----- ----- -----.

제27조(단원의 위촉) ① (생략)

② 반주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④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생략)

제28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

2. 3. (생략)

<신설>

제29조(예산의 지원) ① (생략)

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위탁관리) ①·② (생략)

제27조(단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반주자, 훈련장 -----

-----.

③ (현행과 같음)

④ ----- 반주자, 훈련장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단원의 해촉) -----

-----.

1. ----- 반주자, 훈련장 -----

2. 3. (현행과 같음)

4. 예술단의 용화 단결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29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반주자, 훈련장 -----

-----.

제30조(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음)

③ 예술단의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재단의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그 밖의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을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24조(구성), 제27조(단원의 위촉), 제29조(예산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세출의 순증가액은 제24조(구성), 제27조(단원의 위촉), 제29조(예산의 지원)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훈련장 직위에 대한 수당 등의 예산이 추계될 것으로 판단됨
- 제24조(구성), 제27조(단원의 위촉), 제29조(예산의 지원)의 개정으로 추계되는 비용은 약 7,848천원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참고자료]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692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
- 출연목적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 출연금액 : 2,958,20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주 요 내 용	비고
계		2,958,201		
인 건 비		1,735,766	- 대표이사(1), 사무국장(1), 4급 팀장(3), 5급(2), 6급(5), 7급(13명) - 기간제근로자[시설, 미화, 안내 등] 12명 -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생활문화센터	파견공무원 2명 제외
운 영 비		585,435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	신규	450,000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문화도시 지정 추진 - 예술창작보급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행사 등 개최	
	이관	187,000	-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맞춤형 기획공연 - 권역별 관광축제 등	

○ 출연시기 : 2023년 본예산

○ 출연방법 : 현금출연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12조(운영재원)

○ 동의(승인)내용 : 남동문화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2,958,201천원

□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2022년 본예산 편성

○ 협의부서 : 기획예산과

○ 참고자료 : 『남동문화재단』 설립 출연 계획(안) 1부, 관련 법령 1부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가. 관련 조문**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7조(남동문화재단의 설립)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나. 비용발생요인

- 남동문화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자본금 조성 및 운영비 등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남동문화재단은 2023년 1월 출범 예정으로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문화재단 신규 운영 예상비용 중 인건비는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편성하며, 사업비는 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일정 시기 이후 감소시킬 예정

나. 추계 결과

- 남동문화재단 운영 : 17,078,201천원(2023~2027년) 소요 예상
- 항목별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2,958,201	3,284,000	3,612,000	3,612,000	3,612,000
인건비	1,735,766	1,910,443	2,101,488	2,156,563	2,256,890
운영비	585,435	559,707	576,499	605,437	605,110
사업비	637,000	813,850	934,013	850,000	750,000

※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용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3~2027년 비용 추계 적용

다. 재원조달 방안 : 구 출연 (구비 10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958,201	3,284,000	3,612,000	3,612,000	3,612,000	17,078,201
재원 조달		2,958,201	3,284,000	3,612,000	3,612,000	3,612,000	17,078,20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2,958,201	3,284,000	3,612,000	3,612,000	3,612,000	17,078,201
	지방세	2,958,201	3,284,000	3,612,000	3,612,000	3,612,000	17,078,201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출연동의를 위한 ▮▮▮▮▮
(재)남동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분야 정책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출연한 남동문화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필요
-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남동문화재단의 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자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12조(운영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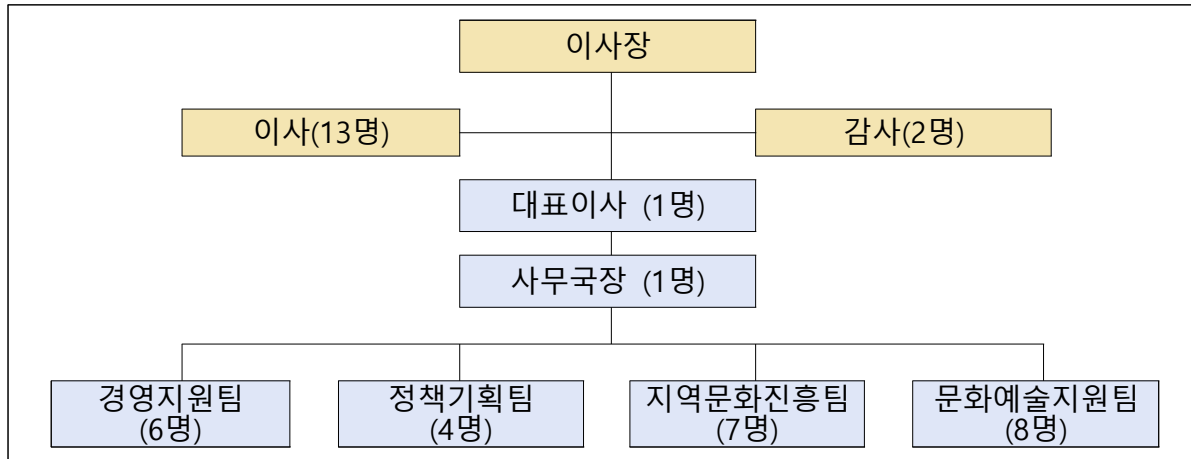
재단의 기본재산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2. (재)남동문화재단 개요

- 형 태 : 출연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 공식출범 : 2023. 1. 1.(예정)
- 조직구성 : 1국 4팀 27명
- 임원구성 : 이사 15명(이사장 1, 이사14), 감사 2명

□ 조직도 : 1국 4팀 27명

○ 조 직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재단 직급					
		2급 (대표이사)	3급 (사무국장)	4급 (팀장)	5급 (차장)	6급 (대리)	7급 (주임)
합 계	27	1	1	4	3	5	13

○ 팀별 임무 및 역할

팀명	인원	임무 및 역할
경영지원팀	6명 (공무원파견 2명 포함)	○ 예·결산 및 회계 운영, 재산 및 물품 관리, 보안 관리 ○ 복무, 인사, 급여, 복리후생, 노무, 세무, 정관 및 제 규정 관리 ○ 이사회 및 감사 운영 ○ 성과관리 및 경영평가 ○ 기금 관리·운용 및 재원 조성 ○ 교육 훈련 및 정보화 서비스 ○ 기타 조직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업무
정책기획팀	4명	○ 지역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 ○ 관련단체 관리 및 대외협력 사무 등 네트워크 구축 ○ 후원회 조성 및 기부금 모집 ○ 전산,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업무 ○ 해외도시 문화기관 및 단체와 문화예술교류 ○ 법정문화도시 추진 ○ 기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업무
지역문화 진흥팀	7명	○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 ○ 문화예술 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 ○ 소래역사관 운영 및 지역문화 발굴 등 업무 ○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생활문화 축제 운영 ○ 기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업무
문화예술 지원팀	8명	○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 ○ 남동소래아트홀 관리·운영 ○ 지역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 ○ 문화예술복지 증진사업 추진 ○ 문화예술단(여성합창단, 풍물단) 운영 지원 ○ 지역 문화예술 행사 기획·운영 ○ 기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추진일정

2022. 11~12월	2022. 11~12월	2022. 11월	2022. 12월	2023. 1월
직원 채용 (2차)	재단사무실 조성	법인 설립 완료	시범 운영	공식 출범

3. 2023년 예산편성 계획

- 편성시기 : 2023년 본예산
- 예 산 액 : 2,958,201천원 (전액 출연금)
-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주 요 내 용	비고
계		2,958,201		
인 건 비		1,735,766	- 대표이사(1), 사무국장(1), 4급 팀장(3), 5급(2), 6급(5), 7급(13명) - 기간제근로자[시설, 미화, 안내 등] 12명 -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생활문화센터	파견공무원 2명 제외
운 영 비		585,435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	신규	450,000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문화도시 지정 추진 - 예술창작보급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행사 등 개최	
	이관	187,000	-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맞춤형 기획공연 - 권역별 관광축제 등 (소래산가을축제)	

※ 별도 대행사업 현황 : 5개 사업 1,694,696천원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

대 행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계		1,694,696	
문화예술 관광사업	구립예술단 운영	159,962	여성합창단, 풍물단
	소래포구축제 개최	600,000	
문화예술 시설관리 등	소래역사관 관리 및 운영	64,752	
	남동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78,163	
	남동소래아트홀 관리 및 운영	791,819	

□ 편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목		주요내용	산출기초	예산액
	세목			
총 계				2,958,201
인 건 비		소 계		944,220
	보 수	○ 봉급		
		- 대표이사(2급)	6,078,710원×1명×12월	72,945
		- 사무국장(3급)	5,197,400원×1명×12월	62,369
		- 팀 장(4급)	3,121,300원×3명×12월	112,367
		- 직 원(5급)	2,819,500원×2명×12월	67,668
		- 직 원(6급)	2,531,300원×5명×12월	151,878
		- 직 원(7급)	2,288,000원×13명×12월	356,928
		○ 제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육아휴직수당, 정액 급식비,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380,195,000원*1식	380,195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기간제근로자 12명 분 보수 - 기본급, 주차수당, 월차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406,949,000원*1식	406,949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124,467,000원*1식	124,467	
일반운영비		소 계		119,250
	사무 관리비	○ 일반수용비	800,000원×12월	9,600
		○ 소프트웨어구입비	900,000원×27대	24,300
		○ 소규모수선비	5,000,000원×1식	5,000
		○ 신문구독료	25,000원×2종×12월	600
		○ 인쇄물제작(홍보물 및 자료집 등)	5,000,000원×1식	5,000
		○ 사원증및명함등제작	25,000원×2종×27명	1,350
		○ 업무및교육용도서구입	100,000원×12월	1,200
		○ CI개발	10,000,000원×1식	10,000
		○ 업무대행수수료	15,000,000원×1식	15,000
		○ 직원채용심사수당(2차)	100,000원×5명×8조	4,000
		○ 직원채용면접수당(2차)	100,000원×5명×8조	4,000
		○ 위원회참석수당	100,000원×6명×5회	3,000
		○ 이사회참석수당	100,000원×15명×5회	7,500
		○ 회의비	8,000원×15명×5회	600
		○ 복합기임차료	500,000원×1대×12월	6,000

목	세목	주요내용	산출기초	예산액
	공공 운영비	○ 정보통신료	500,000원×12월	6,000
		○ 우편발송료	100,000원×12월	1,200
		○ 기타수수료	100,000원×12월	1,200
		○ 보험료(자동차,재정보증보험)	1,700,000원×1식	1,700
		○ 차량선박비	200,000원×12월	2,400
		○ 통행료및주차비등	50,000원×12월	600
		○ 직원근퇴기보안관리시스템	500,000원×12월	6,000
		○ 재단홈페이지운영관리	3,000,000원×1식	3,000
	여 비	○ 국내여비	10,000원×25명×6일×12월	18,000
	업무추진비	○ 사업업무추진비 (대표이사, 사무국장)	500,000원×12월	6,000
	직무수행경비	소 계		53,460
	직급보조비	○ 직급보조비 (대표이사~7급)	51,540,000원×1식	51,540
	특정업무	○ 특정업무수행경비	80,000원×2명×12월	1,920
	복리후생비	소 계		237,889
	사회보험 부담금	○ 사회보험분담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83,625,000원×1식	183,625
	기타복리 후생비	○ 급량비	8,000원×6일×39명×12월	22,464
		○ 맞춤형 복지제도	31,800,000원×1식	31,800
	교육훈련비	○ 교육강사료 및 교육경비	5,000,000원×1식	5,000
	수선유지 교체비	○ 전산장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12,000,000원×1식	12,000
	행사홍보비	소 계		13,700
	행사운영비	○ 사무소개소식및창립기념일 행사 등	5,000,000원×1식	5,000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비 (포털, SNS, 언론 등)	8,700,000원×1식	8,700
	관서업무비	소 계		6,960
	정원가산	○ 정원가산업무비	80,000원×27명	2,160
	부서업무비	○ 부서업무비	400,000원×12월	4,800
	기타협의체 등 부담금	○ 문화재단 연합회 연회비	3,000,000원×1식	3,000
	자산취득비	○ 가구 및 컴퓨터, 업무용 차량 등 구입	100,176,000원×1식	100,176
	예비비	○ 예비비	10,000,000원×1식	10,000
	사업비	소 계		637,000
	신규사업비	○ 문화재단 신규사업 [참고1]	450,000,000원	450,000
	이관사업비	○ 문화재단 이관사업 [참고2]	187,000,000원	187,000

[참고 1] 남동문화재단 신규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계		450,000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문화정책 개발	· 지역 문화예술정책 사업 : 남동문화포럼, 정책연구 등	10,000
	· 정기 지역문화 실태조사(구민, 예술인 대상)	20,000
2. 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온택트 공연·전시 활동 지원	50,000
	· 현장 맞춤형 예술활동 지원	50,000
3. 지역 공공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 공공 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
4. 지역 문화재 진흥사업	· 유·무형문화재 활용 체험교육·공연 활성화	10,000
	· 남동구 미래유산 발굴 및 활용	10,000
5.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및 개최 (축제 등)	· 생활문화축제 개최	10,000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 후원회 조성 : 남동문화재단 후원회 조성, 크라우드 펀딩 도입	10,000
	· 기부금 모집 :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 마련	
7.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50,000
	· 지역 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사업	30,000
	·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연계 협력 구축 사업	10,000
	· 온라인 아카데미 기획·운영	10,000
8.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지역문화 전문(매개)인력 양성 사업	10,000
	· 문화시설 매칭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20,000
9.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문화복지)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주간 등)	10,000
	·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복지 사업 등	50,000
	· 대상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10,000
10.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추진
	· 생활문화 공간 지원사업	
	·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DB 구축 등	
11.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사업	· 국내 기초문화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	5,000
	· 해외도시 문화기관 및 단체와 문화예술 교류	
1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법정 문화도시 추진 : 남동구 문화도시 발전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및 예비사업 발굴·추진	75,000

※ 사업내용 및 예산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2] 남동문화재단 이관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범위	사 업 명	이관부서	예산액
계			187,000
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개인·단체)	문화관광과	30,000
	·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남동구문화예술회)	문화관광과	27,000
	· 남동구문화예술회 지원사업	문화관광과	28,000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및 개최	· 찾아가는 문화공연 기획	문화관광과	45,000
	· 맞춤형 기획공연	문화관광과	27,000
	· 권역별 관광축제	문화관광과	30,000

4. 행정사항

- ☐ 2023년 재단 출연금 구의회 사전 설명 : 문화관광과
 - 2022. 11월 초·중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이전]
- ☐ 2023년 (재)남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구의회 제출 : 기획예산과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관련 법률]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693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및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써,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 연 금 : 17,349천원

※출연금 산정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44,577,535천원) X 1.2/10,000

(단위:천원)

'21년 결산 지방세	'21년 결산 보통세			'22년 정산액	'23년 출연금
	소계((a)+(b))	현년도(a)	과년도(b)		
144,577,535	144,577,535	141,841,800	2,735,735	-	17,349

- 출연방식 : 현금출연('23.3.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 계좌입금)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내 용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17,349천원

□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1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17,349천원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세무1과장 박 종 철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94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구 수정(안 제1조)
- 자구 수정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상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자구 수정(안 제8조)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의 구체적 규정 마련(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6항”을 “법 제4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직원)”을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사무국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원”을 “사무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및 제8항----- ----- ----- ----- -.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u>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u> 의 구성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u><신설></u>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u>법 제41조제7항</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u>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u>각 협의체</u>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 4. (생략)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 <u>각 협의체</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11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
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직원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국) ① -----

-----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
한다.

④ 사무국-----
1.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나. 관련 조문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순 증 : 1명 → 3명(2명 증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적용

나. 추계 결과

- 인건비 638,364천원(2023년 ~ 2027년)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노 송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61,950	62,879	63,822	64,780	65,751	319,182
세 출		123,900	125,758	127,644	129,560	131,502	638,364
재원 조달		123,900	125,758	127,644	129,560	131,502	638,364
의존 재원	소 계	61,950	62,879	63,822	64,780	65,751	319,182
	보조금						
	국비						
	시비	61,950	62,879	63,822	64,780	65,751	319,182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61,950	62,879	63,822	64,780	65,751	319,182
	지방세	61,950	62,879	63,822	64,780	65,751	319,18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1.5%로 가정함

[참고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 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9. 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695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 상세 내역 별도 책자 확인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노 송 희

[참고자료]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남동구)

-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으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기계획의 연동과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 ❖ 변화하는 복지환경을 반영하고 민관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35조
- 시행기간[수립시기] : 2023년 [2022. 10월 수립]
- 목 표 :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남동구』
- 전략체계 : 5개 지자체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4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의 1년차로 제5기 본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되, 2023년 1년간 추진할 구체화된 내용으로 구성
- 국고보조사업인 보편사업을 배제하고 지역사업(지자체 자체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 과정을 부각
- 복지부문 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통합성을 높여 사업 기본 방향 설정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계획 기본 방향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남동구

I.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II.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다양성의
기회가
존중되는
어울림
공동체
실현두루두루
건강 공동체
구축같이 꿈꾸는
활기찬 경제
공동체
구축함께
돌봄으로
누구나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축언제
어디서나
배우며
즐거는
평생배움
공동체 실현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지역사회보
장 인프라
확충(중점추진)
I-1-1
북한이탈
주민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중점추진)
I-2-1
구민건강
증진 위한
만성질환
관리(중점추진)
I-3-1
청년 창업
지원 확대(중점추진)
I-4-1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중점추진)
I-5-1
인생
사계학교
운영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대표과업 1.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대표과업 1.
지역돌봄
인프라 강화(중점추진)
I-1-2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23년 폐지)(중점추진)
I-2-2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중점추진)
I-3-2
공동브랜드
식품 '소래찬
김치' 판매
활성화(중점추진)
I-4-2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
지원(중점추진)
I-5-2
생활형
다목적
경로당 확충II-1-1-1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II-2-1-1
민관복지
협업을 통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활성화II-3-1-1
민관협력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축,
활성화II-4-1-1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 지원I-1-3
공동주택
보증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장 지원I-2-3
화재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I-3-3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중점추진)
I-4-3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운영
내설화I-5-3
공립
작은도서관
확충 및
남동구
스마트
도서관 운영I-2-6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II-2-1-2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구축II-3-1-2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 지원II-4-1-2
복지관 기능
강화I-1-4
주민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I-2-4
아동
보호구역-
설치
(23년 폐지)I-3-4
인천E음
해택플러스
가맹점 지원I-4-4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I-5-4
아동이
주도하는
어린이 축제
개최대표과업 2.
부정성
수급방지대표과업 2.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남동구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활성화
및 지원 방안대표과업 2.
문화여가
인프라 강화I-1-5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추진I-2-5
찾아가는-
경로당-
관람아동
관료로-
맞춤형-
관람관리
(23년 폐지)I-3-5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I-4-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I-5-5
남동
생활문화
센터 운영II-1-2-1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위한 홍보II-2-2-1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친화
도시 조성II-3-2-1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I-5-2
생활형
다목적
경로당 확충I-1-6
아동
친화도시
조성 세부
과제 이행I-2-6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I-3-6
지역주민
고용기업
매칭 확대I-4-6
결식아동
급식 지원I-5-6
소래포구 축제
확대 개편II-1-2-2
생계급여
부정수급
방지II-2-2-2
민관이
함께
만드는
아동친화
도시II-3-2-2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강화II-4-2-1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I-1-7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및
육아학교지원I-2-7
자원재활용
(자원순환)
교실 운영I-4-7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대표과업 3.
장애특화
인프라
확충I-2-8
저지대 주택
침수 예방
(23년 신설)II-4-3-1
뇌병변
장애인발달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II-4-3-2
무장애
놀이시설
운영

□ 행정·재정계획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지역사회 케어체계 구축

○ 2023년 주요 복지사업 예산 반영

□ 민관협력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방안

○ 지역사회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협의체 역량 강화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개최 확대

○ 동 인적안전망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 사회복지명예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 인적자원 활용

□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

○ 평가시기 : 시행년도 다음해 2월까지 실시

○ 평가방법 : 사업부서의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주관의 평가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

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696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시행 중인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정부 사업 대상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되어 존치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제정 2020.09.25. 조례 제1721호)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비교
-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참고자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 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비교

서비스명	대 상	소득 기준	지원 내용	추진 주체
남동구 청각장애 부모 영아 돌봄	만 2세 미만 아동 (부 또는 모가 청각 장애)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어통역사와 언어재활사 방문서비스 비용 지원 (2인 1조)	남동구
발달재활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언어·미술·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운동 재활 등 서비스 제공	보건 복지부
언어발달지원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 언어재활, 청 능재활서비스 지원	보건 복지부

□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언어발달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영아자녀”란 2세 이하의 아이로서 청각장애인 부모(부 또는 모 어느 한쪽만 청각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아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시책을 수립하고 언어발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언어발달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영아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아자녀의 언어발달 돌봄과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남동구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 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수어가능자가 가정방문을 통한 영아의 언어발달 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사유로 영아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영아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영아의 언어발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조례 제1721호, 2020.9.2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97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1.12.21. 시행)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2.06.21. 시행)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임 법령 개정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원대상의 명료화(안 제2조, 안 제3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3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4항”을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5항”으로,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 다음”으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하는 아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로, “아동”을 “아동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긴급복지”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를 “보호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등 사유”를 “등의 사유”로,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을 “미약한 가구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를 “담임교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선정결과 등를”을 “선정결과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5항 ----- 시행령 제36조제6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 다음 ----- 해당하는 아동으로 ---.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 -----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아동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등록
된 아동

라.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
록장애인으로서는 일정기준 이
하인 저소득 가구의 아동

마.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바.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
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
구의 아동

사.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
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
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
호가 필요한 아동

아.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
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아동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
는 아동

<삭 제>

<삭 제>

마.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

바. -----
----- 보호가 필요한 -----

사. -----
----- 등의 사유-----
----- 미약한 가구의 -----

<삭 제>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
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
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
동으로 남동구 아동급식위원
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
고 결정한 아동

2. (생략)

<신설>

제4조(지원내용) 남동구청장(이하“구
 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별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중·석
 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선정시 선정결과 등을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
 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차. ----- 담임교사-----

2. (현행과 같음)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
동

제4조(지원내용) ----- (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

제8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현행
 과 같음)

② ----- 선정결과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복지국 아동복지과장 한 상 호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98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3년 상반기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설치(개원)일	위탁기간
아름드리	남동대로 860, 105동 102호 (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84.98㎡ (지상1층)	20명	'13.04.12	'23.04.12. ~ '28.04.11.
서창푸른빛	서창남순환로 82, 관리동 (서창동, 청광플러스원아파트)	262.92㎡ (지상1층)	53명	'18.07.01	'23.07.01. ~ '28.06.30.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 어린이집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 소요예산 : 4,783,193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위치도 등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체)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국공립어린이집(2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등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2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운영비는 2022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 2027년
- 비용추계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발생비용 : 4,783,193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4,166,225천원, 구비 616,968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790,111	811,460	833,449	856,098	875,107	4,166,225
국시비보조금		790,111	811,460	833,449	856,098	875,107	4,166,225
세 출		907,776	931,485	955,906	981,059	1,006,967	4,783,19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907,776	931,485	955,906	981,059	1,006,967	4,783,193
재원 조달		907,776	931,485	955,906	981,059	1,006,967	4,783,193
의존 재원	소 계	790,111	811,460	833,449	856,098	875,107	4,166,225
	보 조 금						
	국비	533,803	548,814	564,275	580,200	596,603	2,823,695
	시비	256,308	262,646	269,174	275,898	278,504	1,342,530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17,665	120,025	122,457	124,961	131,860	616,968
	구 비	117,665	120,025	122,457	124,961	131,860	616,968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평균호봉 기준으로 승급에 따른 인상률(3%) 적용 추산

[참고자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 2023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

(2022. 10. 25.기준)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아름드리	남동대로 860, 105동 102호 (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84.98㎡ (지상1층)	20명	20명	민라영	'18.04.12. ~'23.04.11.
서창푸른빛	서창남순환로 82, 관리동 (서창동, 청광플러스원아파트)	262.92㎡ (지상1층)	53명	46명	김희경	'18.07.01. ~'23.06.30.

- 위탁(예정)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아름드리 : '23. 04. 12. ~ '28. 04. 11.

- 서창푸른빛 : '23. 07. 01. ~ '28. 06. 30.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IV

세부 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2. 12월 ~ 2023. 1월중 (20일 이상)
- 공고내용 :【붙임1】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참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월중 (7일 이상)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제출서류 :【붙임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위탁체 신청자격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고용된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증빙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위탁체 선정 심사

1. 위탁체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보건복지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 사 항 목	배 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제 결과,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2.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V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22. 11월 ~ 12월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22. 12월 ~ '23. 1월
-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심사 절차 이행: '23. 1월중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23. 2월중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23. 3월중

- 붙임 1.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부.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남동구 공고 제2022 - 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월 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인가일	비고
아름드리	남동대로 860, 105동 102호 (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84.98㎡ (지상1층)	20명	'13.04.12	변경
서창푸른빛	서창남순환로 82, 관리동 (서창동, 청광플러스원아파트)	262.92㎡ (지상1층)	53명	'18.07.01	변경

※ 기존 위탁체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체 선정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아름드리 : '23. 04. 12. ~ '28. 04. 11.

○ 서창푸른빛 : '23. 07. 01. ~ '28. 06. 30.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2. 12 ~ 2023. 1월중 (20일 이상)

○ 접수기간 : 2023. 1월중 (7일 이상)

○ 접수장소 : 남동구청 6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
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은 신청 가능)
-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증빙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10
■ 재정능력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

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

의안 번호	2699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관련 의회 의견청취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예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설치 필요성이 없는 해제권고 시설은 1년 이내 해제 입안조치)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 비재정적 사업

시 설 별	시 행 기 간											
	계			1단계(2023~2025)			2단계(2026~2027)			2-2단계(2027년 이후)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109 (12)	106,884 (37,800)	154,743 (11,427)	10 (1)	19,175 (3,468)	16,584 (2,661)	18 (-)	14,232	25,321	81 (11)	73,477 (34,322)	112,838 (8,766)
도 로	88 (7)	65,472 (14,544)	120,928 (6,432)	8 (-)	15,274	11,873	18 (-)	14,232	25,321	62 (7)	35,966 (14,544)	83,734 (6,432)
주차장	8 (1)	6,399 (1,533)	11,437 (767)	0 (-)	-	-	0 (-)	-	-	8 (1)	6,399 (1,533)	11,437 (767)
공 원	8 (2)	18,409 (9,465)	14,081 (3,183)	2 (1)	3,901 (3,468)	4,711 (2,661)	0 (-)	-	-	6 (1)	14,508 (5,997)	9,370 (522)
녹 지	4 (1)	15,363 (11,017)	8,211 (959)	0 (-)	-	-	0 (-)	-	-	4 (1)	15,363 (11,017)	8,211 (959)
도서관	1 (1)	1,241 (1,241)	86 (86)	0 (-)	-	-	0 (-)	-	-	1 (1)	1,241 (1,241)	86 (86)

※ 시설별 세부계획은 불임1 단계별집행계획(사업부서 취합자료)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시 행 기 간								
	총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장기미집행)		
	건수	면적(㎡)	비율(%)	건수	면적(㎡)	비율(%)	건수	면적(㎡)	비율(%)
계	109	106,884	100	4	6,745	100	105	100,139	100.0
도 로	88	65,472	61.3	2	5,992	88.8	86	59,480	59.4
주차장	8	6,399	6.0	0	-	0.0	8	6,399	6.4
공 원	8	18,409	17.2	1	433	6.4	7	17,976	18.0
녹 지	4	15,363	14.4	1	320	4.7	3	15,043	15.0
도서관	1	1,241	1.2	0	-	0.0	1	1,241	1.2

나. 설치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우선해제 필요시설

- 해당없음

- 붙임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사업부서 취합자료) 1부.
2.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 관리카드(사업부서 취합자료) 1부. 끝.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00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안 제4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안 제5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안 제6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방법 (안 제7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제한 등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실비를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할 수 있다.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2. 신청인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한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지원대상자 (신청인)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성별
	산후조리원명			
	소재지		출생일자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대상자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중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원			
소재지		전화번호	
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결제 금액	(원)		

상기인은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후조리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실비를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나. 비용발생 요인 : 산후조리비용 지원

- (1)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7일 이상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 “150만원” 지원, 7일 이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실비를 “150만원 이내” 지원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약 350명으로 예측한다.
 (2) 2023년 1월부터 1인당 1회에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 추계 결과

- (1) 지원대상자 350명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연간 총 525,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2) 대상인원은 취약계층 소득수준 단계적 완화 및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유지됨으로 가정한다.

[표 1]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 : 2023~2027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임산부	2,200	2,000	1,800	1,700	1,600	9,300
대상인원	350 (16%)	350 (18%)	350 (19%)	350 (21%)	350 (22%)	1,750
소요예산	525	525	525	525	525	2,625

다. 재원조달 방안

(1) 전액 구비로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심 미 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일반회계							
세 출		525,000	525,000	525,000	525,000	525,000	2,625,000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525,000	525,000	525,000	525,000	525,000	2,62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702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1. 제출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 남동구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총 6개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1년도 말 현재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 말 현재액 [㉡] =([㉠])+(㉢)-(㉣)	증 감 [㉤] =([㉡])-([㉠])
		수입 [㉢]	지출 [㉣]		
계	39,349,958	2,408,787	4,392,176	37,366,569	△1,983,3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1,826,816	359,504	609,504	21,576,816	△25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0,000	3,180	0	203,180	3,180
재난관리기금	4,887,458	1,463,961	2,564,542	3,786,877	△1,100,581
중소기업육성기금	5,309,695	83,422	400,000	4,993,117	△316,578
사회복지기금	4,985,114	85,426	358,632	4,711,908	△273,206
옥외광고발전기금	565,538	259,368	201,341	623,565	58,027
식품진흥기금	1,575,337	153,926	258,157	1,471,106	△104,231

○ 자금수지총괄 변경

(단위 : 천원)

수입/지출계획				
기금명	예산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옥외광고발전기금	624,906	434,906	190,000	

3. 첨부서류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첨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2703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1. 제출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 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 감 ④-①
		수 입 ②	지 출 ③		
합 계	37,399,209	2,662,858	4,275,271	35,786,796	△1,612,4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1,576,291	741,916	638,520	21,679,687	103,39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3,180	762	203,180	762	△202,418
재난관리기금	3,786,877	1,494,410	2,131,200	3,150,087	△636,790
중소기업육성기금	4,993,117	121,455	400,000	4,714,572	△278,545
사회복지기금	4,711,908	119,456	342,878	4,488,486	△223,422
옥외광고발전기금	623,565	24,742	328,000	320,307	△303,258
식품진흥기금	1,504,271	160,117	231,493	1,432,895	△71,376

3. 첨부서류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3년도 예산안에 첨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706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감면세목 : 주민세, 재산세(건축물, 토지 등)
- 감면내용
 - ①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 ②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 2020.3.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 부과되는 구세(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없음(2022.11.7.일 기준)

작성자 : 재정경제국 세무1과장 박종철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壊)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⑨ (생략)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2020.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壊)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 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 지원
 7. ~ 9. (생략)
- ④ ~ ⑦ (생략)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 2022-200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11. 21.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11. 04. ~ 2022. 11. 18.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휴게음식점	2021-0202291	세븐일레븐 구월로데오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20, 1층 102호일부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9-30	2022-11-2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11. 18.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 11. 04.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 2022-202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11. 22.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11. 08. ~ 2022. 11. 22.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07- 0199469	누령소 정육점	임**	만수동 1114번지 햇빛마을벽산아파트분산상가 1층 일부(105,10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6-10	2022-11-22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11. 21.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1

2022. 11. 08.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 2022-202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11. 23.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11. 08. ~ 2022. 11. 22.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20-0202076	2피자1치킨상회 구월점	김**,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9, 1층 105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10-28	2022-11-23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11. 22.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 11. 08.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 2022-203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11. 24.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11. 09. ~ 2022. 11. 2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휴게음식점	1993-0199146	미니스톱 만수무강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04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1996-03-31	2022-11-24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11. 23.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
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2. 11. 09.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12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701 (만수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1-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701 (만수동)	2009.7.10.	지역명칭 인용	2022.11.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 70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0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11 (만수동)	2009.7.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2.11.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 31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11을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2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53-4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조서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 청사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남동구 간석동 353-4번지 일원	-	증) 998.3	998.3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간석1동 청사)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간석동 353-4번지 - 면적 : 998.3㎡ 증) 998.3㎡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편의시설 및 주민자치공간 부족 등 시설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상태임 ·효율적인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청사부지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계획함 ·신축규모(연면적 2,885.57㎡)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통하여 용도지역(2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건축제한 해소하고자 함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26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1. 10.

남 동 구 청 장

I.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Ⅲ. 도시관리계획[소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①	소래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218,947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계		218,947	100.0	
주거 지역	소계	141,062	64.5	
	제2종일반주거지역	47,517	21.6	
	제3종일반주거지역	53,152	24.5	
	준주거지역	40,393	18.4	
일반상업지역		73,189	33.3	
자연녹지지역		4,696	2.2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소래포구, 논현2지구 일원	171,979.0 (73,668.0)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22	7,041	123,766	5	3,059	58,541	13	2,280	30,732	4	1,702	34,493
변경	합계	23	7,087	124,450	5	3,059	58,541	14	2,326	31,416	4	1,702	34,493
기정	대로	2	1,413	37,048	-	-	-	1	343	10,098	1	1,070	26,950
기정	중로	7	3,994	73,401	2	2,763	55,581	4	734	11,010	1	497	6,810
변경	중로	8	4,040	74,085	2	2,763	55,581	5	780	11,694	1	497	6,810
기정	소로	13	1,634	13,317	3	296	2,960	8	1,203	9,624	2	135	733

※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 조서 (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4	30~34	보조간선	343	논현동11~407 (논현2지구계)	대1-20	일반도로		인고 제2007-53호	
기정	대로	3	76	25~31	집산도로	1,070 (583)	대3-23	중1-90	일반도로		인고 제2002-310호	
기정	중로	1	90	20	국지도로	180	중1-302	대3-76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간선	2,583 (296)	소래·논현지구 지구계남동측	대1-2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8	15~18	국지도로	127	중(소래) 3-2	대3-7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9	15	국지도로	390 (128)	대3-76	논현동21-2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2	110	15~18	국지도로	110	대3-76	중(소래)3-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소래1	18	국지도로	107	대3-76	대1-20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중로	3	소래2	12~16	국지도로	497	대2-74	중1-302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1	1	10	국지도로	50	대3-76	소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0	대3-76	소1-4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4	9.5~10	국지도로	232	소2-1	대2-74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8	10~12	국지도로	127	중2-109	대2-74	일반도로		남동구고시 제1997-23호	
기정	소로	1	소래3	10	국지도로	14	중1-302	논현동 111-252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10	대3-76	109-8호 (소래초교)	일반도로		인고 제1994-208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00	대3-76	소1-8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40	중1-90	중(소래) 3-2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24	중1-90	대1-20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소래4	8	국지도로	112	소1-3	소1-4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5	8	국지도로	100	중2-58	소2-9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6	8	국지도로	79	소2-9	소(소래)2-7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7	8	국지도로	204	소2-9	소(소래)3-2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소래8	4	특수도로	31	중1-302	소(소래)2-7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4	논현동 111-10	중로 1-302	일반도로		남동구고시 제2017-75호	역사 공원 중복 결정
신설	중로	2	768	16	특수도로	46	논현동 111-431	논현동 111-167	보행자 전용도로			

※ ()의 구역내 사항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768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폭원 : 16m - 연장 : 46m	- 소래포구 어시장의 활성화 및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공간확보를 위해 중로1-302호선으로부터 소래포구어시장으로의 보행동선 연결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논현동 111-36일원	739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②	주차장	논현동 66-99일원	4,444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③	주차장	논현동 66-96일원	3,375	인고 제2011-225호	소공원①과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광장	일반광장	논현동 111-329 일원	864	인고 제2011-225호	

(2)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	역사공원	남동구 논현동 111-13 일원	4,264	인고 제2011-225호	소로3-10호선 중복결정
기정	②	소래 소공원	소공원	남동구 논현동 66-96 일원	4,610	인고 제2012-324호	지하주차장③, 유수지 일부 중복결정

주1) 소공원②은 지하주차장③ 3,375㎡ 전체중복, 유수지 전체 1,632㎡ 중 680㎡ 중복

주2) 역사공원①은 소로3-10호선 634㎡ 전체 중복

(3)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810-3번지 일원	1,558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810-2	1,872.9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810-1	2,677.8	인고 제2011-225호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75일원	322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일원	70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③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일원	154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④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87일원	271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⑤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60일원	183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남동구 논현동 66-98일원	1,632	인고 제2012-324호	소공원②과 중복결정

주) 유수지는 소공원② 전체 4,610㎡ 중 680㎡ 중복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	남동구 논현동 66-104일원	492	인고 제2011-225호	오수중계 펌프시설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정조서 (변경)

가) 주거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주거 계	32,753	-		32,753		-		32,753	
주1BL	10,236	1	109-202대	160	1	109-202대	160	제2종일반주거지역	
		2	109-200답	320	2	109-200답	320		
		3	109-198대	456	3	109-198대	456		
		4	109-158대	510	4	109-158대	510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2개	
			109-159답	20		109-159답	20		
			소계	530		소계	530		
		5	109-157대	623	5	109-157대	623		
		6	109-156대	570	6	109-156대	570		
		7	109-165대	227	7	109-165대	227		
		8	109-167대	225	8	109-167대	225		
		9	109-164대	174	9	109-164대	174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2개	
			109-169대	140		109-169대	140		
			소계	314		소계	314		
		10	109-163대	182	10	109-163대	182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2개	
			109-170대	139		109-170대	139		
			소계	321		소계	321		
		11	109-99대	331	11	109-99대	331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2	109-103답	331	12	109-103답	331		
		13	109-100답	188	13	109-100답	188	○ 공동개발지정 ※ 필지수:2개	○ 획지간 공동 개발 권장
			109-151답	142		109-151답	142		
			소계	330		소계	330		
		14	109-152답	189	14	109-152답	189	○ 공동개발지정 ※ 필지수:2개	
			109-220답	130		109-220답	130		
			소계	319		소계	319		
		15	109-153답	214	15	109-153답	214	○ 공동개발지정 ※ 필지수:2개	
			109-221답	129		109-221답	129		
			소계	343		소계	343		
		16	109-166대	683	16	109-166대	683		
		17	109-97답	1,455	17	109-97답	1,455		
		18	109-69잡	99	18	109-69잡	9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9	109-70대	198	19	109-70대	198		
		20	109-71대	120	20	109-71대	120		
		21	109-72대	205	21	109-72대	205		
		22	109-73대	600	22	109-73대	600	○ 공동개발지정 ※ 필지수:4개	
			109-215대	398		109-215대	398		
			111-26대	122		111-26대	122		
			111-27대	78		111-27대	78		
			소계	1,198		소계	1,198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주1BL (계속)	(10,236)	23	111-29대	108	23	111-29대	108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455대	10		111-455대	10		
			소계	118		소계	118		
		24	111-28대	208	24	111-28대	208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4개	
			111-32전	23		111-32전	23		
			111-453대	10		111-453대	10		
			111-459전	1		111-459전	1		
			소계	242		소계	242		
		도로	111-14도	114	도로	111-14도	114	※ 비건축 부지	
			109-159답	2		109-159답	2		
			109-160도	7		109-160도	7		
			109-161도	7		109-161도	7		
			109-162답	280		109-162답	280		
			109-168도	62		109-168도	62		
			111-467도	7		111-467도	7		
			111-468도	10		111-468도	10		
			111-477도	26		111-477도	26		
			111-478도	3		111-478도	3		
		소계	518	소계	518	※ 필지수 : 10개			
		주2BL	5,031	1	109-19주	857	1	109-19주	857
2	109-35대			457	2	109-35대	457		
3	109-94잡			742	3	109-94잡	742		
4	109-232잡			131	4	109-232잡	131		
5	109-37대			432	5	109-37대	432		
6	109-38대			146	6	109-38대	146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4개	
	109-40대			1,557		109-40대	1,557		
	109-182답			5		109-182답	5		
	109-244대			18		109-244대	18		
	소계			1,726		소계	1,726		
7	109-177답			364	7	109-177답	364		
8	109-42대			159	8	109-42대	159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81전			2		109-181전	2		
	소계			161		소계	161		
9	109-101답			161	9	109-101답	161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면적(m ²)	위 치		면적(m ²)	위 치		면적(m ²)		
주3BL	2,007	1	109-49대	110	1	109-49대	110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2	109-50대	120	2	109-50대	120		
		3	109-48대	108	3	109-48대	108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4	109-140대	135	4	109-140대	135		
			109-246대	17		109-246대	17		
			소계	152		소계	152		
		5	109-51대	147	5	109-51대	147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6	109-53대	99	6	109-53대	99		
		7	109-52대	272	7	109-52대	272		
		8	109-56대	46	8	109-56대	46	○ 공동개발 지정	
			110-1대	230		110-1대	230		
			소계	276		소계	276		※ 필지수 : 2개
		9	109-54대	39	9	109-54대	39	○ 공동개발 지정	
			111-96대	182		111-96대	182		
			소계	221		소계	221		※ 필지수 : 2개
		10	109-57대	45	10	109-57대	45	○ 공동개발 지정	
			109-58답	36		109-58답	36		
			110-3대	165		110-3대	165		
			110-5대	41		110-5대	41		
			소계	287		소계	287		※ 필지수 : 4개
		11	109-55대	10	11	109-55대	10	○ 공동개발 지정	
			111-97대	177		111-97대	177		
			111-98대	28		111-98대	28		
			소계	215		소계	215		※ 필지수 : 3개
주4BL	3,948	1	109-107답	25	1	109-107답	25	○ 공동개발 지정	
			109-235대	326		109-235대	326		
			109-172답	48		109-172답	48		
			소계	399		소계	399		※ 필지수 : 3개
		2	109-144대	417	2	109-144대	417	○ 공동개발 지정	
			109-180대	20		109-180대	20		
			소계	437		소계	437		※ 필지수 : 2개
		3	109-145대	433	3	109-145대	433		
		4	109-146대	547	4	109-146대	547		
		5	109-142답	31	5	109-142답	31	○ 공동개발 지정	
			109-146대	41		109-146대	41		
			109-147대	644		109-147대	644		
			소계	716		소계	716		※ 필지수 : 3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주4BL (계속)	(3,948)	6	109-58답	29	6	109-58답	29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09-59답	271		109-59답	271		
			소계	300		소계	300		
		7	110-2대	314	7	110-2대	314		
		8	111-101대	112	8	111-101대	112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5개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102대	196		111-102대	196		
			111-103대	23		111-103대	23		
			111-3도	5		111-3도	5		
			111-5도	1		111-5도	1		
			소계	337		소계	337		
		9	111-98대	72	9	111-98대	72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11-99대	258		111-99대	258		
			111-100대	135		111-100대	135		
			소계	465		소계	465		
		주5BL	4,714	1	109-118대	104	1	109-118대	104
109-135답	7				109-135답	7			
소계	111				소계	111			
2	68-2대			126	2	68-2대	126	○ 공동개발 지정	
	68-17대			110		68-17대	110		
	68-18대			149		68-18대	149		
	68-84전			1		68-84전	1		
	109-36대			431		109-36대	431		
	109-176대			739		109-176대	739		
	소계			1,556		소계	1,556		
3	68-81전			137	3	68-81전	137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68-82전			415		68-82전	415		
	68-83전			670		68-83전	670		
	소계			1,222		소계	1,222		
4	66대			405	4	66대	405		
5	66-44대			331	5	66-44대	331		
6	68-23대			20	6	68-23대	20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68-78대			167		68-78대	167		
	68-79대			1		68-79대	1		
	소계			188		소계	188		
7	68-74차			157	7	68-74차	157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68-75종			497		68-75종	497		
	소계			654		소계	654		
도로	68-19도			207	도로	68-19도	207	※ 비건축 부지 ※ 필지수 : 2개	
	109-122도			40		109-122도	40		
	소계			247		소계	247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주6BL	6,817	1	68-20종	2,380	1	68-20종	2,380	○ 공동개발 지정
			109-39전	27		109-39전	27	
			109-122도	24		109-122도	24	
			109-125답	4		109-125답	4	
			소계	2,435		소계	2,435	
		2	68-20종	46	2	68-20종	46	○ 공동개발 지정
			68-38전	91		68-38전	91	
			소계	137		소계	137	
		3	68-23대	60	3	68-23대	60	○ 공동개발 지정
			68-80대	131		68-80대	131	
			소계	191		소계	191	
		4	66-39대	379	4	66-39대	379	
		5	68-24전	345	5	68-24전	345	
		6	68-25전	198	6	68-25전	198	
		7	68-39전	266	7	68-39전	266	
		8	68-40전	317	8	68-40전	317	
		9	68-26전	66	9	68-26전	66	○ 공동개발 지정
			68-33전	250		68-33전	250	
			68-37전	115		68-37전	115	
			68-50도	4		68-50도	4	
			소계	435		소계	435	
		10	109-149대	751	10	109-149대	751	
		11	68-77대	1,214	11	68-77대	1,214	
		도로	68-19도	149	도로	68-19도	149	※ 비건축 부지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25,998.9	-		25,998.9	-		25,998.9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 1BL	25,998.9	1	810대	25,998.9	1	810대	25,998.9	

다)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위 치		면적 (㎡)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계	27,523	-		27,523	-		27,356	준주거지역		
준1BL	6,286	1	111-264대	203	1	111-264대	203	-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7Lot ② 준1BL 8~9Lot ③ 준1BL 10~11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18Lot
		2	111-251대	237	2	111-251대	237	-		
		3	111-245대	200	3	111-245대	200	-		
		4	111-246대	201	4	111-246대	201	-		
		5	111-247대	200	5	111-247대	200	-		
		6	111-248대	201	6	111-248대	201	○ 공동개발 지정		
			111-249대	209		111-249대	209			
		계		410	계		410	※ 필지수 :2개		
		7	111-250대	210	7	111-250대	210	-		
		8	111-8대	356	8	111-8대	356	-		
		9	111-11대	171	9	111-11대	171	○ 공동개발 지정		
			111-396대	76		111-396대	76			
			계	247		계	247		※ 필지수 :2개	
		10	111-154대	293	10	111-154대	293	-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2~18Lot	
		11	111-259대	297	11	111-259대	297	-		
		12	111-263대	456	12	111-263대	456	-		
		13	111-261대	603	13	111-261대	603	-		
		14	111-256대	580	14	111-256대	580	-		
15	111-257대	478	15	111-257대	478	-				
16	111-258대	454	16	111-258대	454	-				
17	111-158대	273	17	111-158대	273	-				
18	111-260대	588	18	111-260대	588	※ 비건축부지				
준2BL	8,939	1	111-209대	229	1	111-209대	22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2~3Lot ② 준2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1~25Lot	
		2	111-215대	241	2	111-215대	241			
		3	111-192대	277	3	111-192대	277			
		4	111-254대	203	4	111-254대	203			
		5	111-295대	202	5	111-295대	202			
		6	111-20대	877	6	111-20대	877	○ 공동개발지정		
			66-18잡	161		66-18잡	161			
			소계	1,038		소계	1,038			※ 필지수 : 2개
		7	111-210대	206	7	111-210대	206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7~25Lot		
		8	111-220대	206	8	111-220대	206			
		9	111-211대	206	9	111-211대	206			
		10	111-221대	207	10	111-221대	207			
		11	111-212대	206	11	111-212대	206			
		12	111-222대	206	12	111-222대	206			
		13	111-213대	252	13	111-213대	252			
		14	111-216대	420	14	111-216대	420			
		15	111-217대	427	15	111-217대	427			
		16	111-225대	352	16	111-225대	352			
		17	111-226대	352	17	111-226대	352			
		18	111-227대	352	18	111-227대	352			
		19	111-255대	458	19	111-255대	458			
		20	111-230대	601	20	111-230대	601			
		21	111-265대	428	21	111-265대	428			
		22	111-229대	485	22	111-229대	485			
		23	111-228대	544	23	111-228대	544			
24	111-214도	405	24	111-214도	405	※ 비건축 부지				
25	111-231도	436	25	111-231도	436	※ 비건축 부지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위 치		면적 (㎡)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3BL	2,920	1	111-152대	292	1	111-152대	292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2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3Lot
		2	111-196대	1,407	2	111-196대	1,407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12-1대	181		112-1대	181					
			112-2도	63		112-2도	63					
			소계	1,651		소계	1,651					
		3	111-56대	2	3	111-56대	2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5개			
			111-161대	519		111-161대	519					
			111-173도	225		111-173도	225					
			111-174대	8		111-174대	8					
			111-176대	223		111-176대	223					
소계	977		소계	977								
준4BL	3,498	1	111-300대	744	1	111-300대	744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3Lot ② 준4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5Lot
		2	111-161대	24	2	111-161대	24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5개			
			111-173도	64		111-173도	64					
			111-176대	1		111-176대	1					
			111-179대	383		111-179대	383					
			111-235대	155		111-235대	155					
			소계	627		소계	627					
		3	111-173도	130	3	111-173도	130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4개			
			111-176대	4		111-176대	4					
			111-180대	343		111-180대	343					
			111-235대	82		111-235대	82					
			소계	559		소계	559					
			4	111-56대		74	4			111-56대		
		111-169대		183	111-169대	183						
		111-170대		658	111-170대	658						
		111-173도		83	111-173도	83						
		111-176대		73	111-176대	73						
		소계		1,071	소계	1,071						
		5	111-57대	157	5	111-57대	157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6개			
			111-166대	9		111-166대	9					
			111-171대	34		111-171대	34					
			111-172대	105		111-172대	105					
			111-174대	166		111-174대	166					
			111-175대	26		111-175대	26					
		소계	497	소계	497							
		준5BL	5,629	1	111-183대	1,718	1	111-183대	1,718			
2	111-301창			1,316	2	111-301창	1,316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11-238대			2		111-238대	2					
	소계			1,318		소계	1,318					
	3			111-197대		13	3			111-197대	13	○ 공동개발 지정
111-239대				63	111-239대	63						
111-241대				28	111-241대	28						
111-242대				6	111-242대	6						
111-243대				63	111-243대	63						
111-301창				107	111-301창	107						
111-344창				1,427	111-344창	1,427						
소계	1,707			소계	1,707							
4	111-232대			415	4	111-232대	415					
5	111-244대	133	5	111-244대	133							
6	111-233대	110	6	111-233대	110	※ 비건축 부지						
7	111-236도	228	7	111-236도	228	※ 비건축 부지						
준6BL	251	1	111-182대	249	1	111-182대	249	○ 공동개발 지정				
			111-330대	2		111-330대	2					
			소계	251		소계	251				※ 필지수 : 2개	

라) 상업시설용지 (변경)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비 고					
상업 계	52,389	-	-	53,077	-	-	52,389	일반상업지역			
상1BL	1,524	1	111-9대	24	1	111-9대	24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22대	11		111-22대	11				
			111-23대	502		111-23대	502				
			111-31대	26		111-31대	26				
			111-137대	141		111-137대	141				
			111-406전	40		111-406전	40				
			111-435대	1		111-435대	1				
			111-437대	2		111-437대	2				
			111-439대	7		111-439대	7				
			111-457전	5		111-457전	5				
			소계	759		소계	759			※ 필지수 : 10개	
		2	111-24대	337	2	111-24대	337				
			111-36철	89		111-36철	89				
			111-54전	308		3	111-54전	308	○ 공동개발 지정		
			111-55대	31			111-55대	31			
			소계	428			소계	428			※ 필지수 : 3개
		상2BL	9,141	1	66-1제	348	1	66-1제	348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2LOT
					66-58제	5		66-58제	5		
					111-38대	258		111-38대	258		
					111-39대	22		111-39대	22		
111-40대	311				111-40대	311					
111-41대	278				111-41대	278					
111-42대	374				111-42대	374					
111-108도	5				111-108도	5					
111-111대	58				111-111대	58					
111-112대	53				111-112대	53					
111-113도	56				111-113도	56					
111-114대	188				111-114대	188					
111-115대	185				111-115대	185					
111-116대	112				111-116대	112					
111-117대	136				111-117대	136					
111-118대	136				111-118대	136					
111-119대	152				111-119대	152					
111-120대	46				111-120대	46					
111-121대	274				111-121대	274					
111-122대	238				111-122대	238					
111-441대	15	111-441대	15								
111-443대	14	111-443대	14								
66-59도	10	66-59도	10								
소계	3,274	소계	3,274	※ 필지수 : 23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상2BL (계속)	(9,141)	2	66-1제	278	66-1제	278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계속)	
			111-43대	104	111-43대	104			
			111-44대	390	111-44대	390			
			111-45대	75	111-45대	75			
			111-123대	334	111-123대	334			
			111-124대	516	111-124대	516			
			111-125대	552	111-125대	552			
			111-126대	300	111-126대	300			
			111-127대	145	111-127대	145			
			111-202대	40	111-202대	40			
			111-203대	65	111-203대	65			
			111-204대	57	111-204대	57			
			111-205대	121	111-205대	121			
			111-322대	95	111-322대	95			
			소계	3,072	소계	3,072			※ 필지수 : 14개
		3	66-5잡	2,794	66-5잡	2,794	○ 공동개발 지정		
			66-60잡	1	66-60잡	1			
			소계	2,795	소계	2,795			※ 필지수 : 2개
상3BL	18,385	1	66-41제	232	66-41제	232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47대	18	111-47대	18			
			111-48대	103	111-48대	103			
			111-49대	165	111-49대	165			
			111-50대	188	111-50대	188			
			111-51대	40	111-51대	40			
			111-52대	162	111-52대	162			
			111-129대	44	111-129대	44			
			111-130대	15	111-130대	15			
			111-131대	165	111-131대	165			
			111-132대	73	111-132대	73			
			111-133대	175	111-133대	175			
			111-135대	109	111-135대	109			
			111-201대	290	111-201대	290			
			111-319대	5	111-319대	5			
			111-325대	6	111-325대	6			
			111-326대	120	111-326대	120			
			소계	1,910	소계	1,910			※ 필지수 : 17개
		2	66-41제	461	66-41제	461	○ 공동개발 지정		
			111-7대	45	111-7대	45			
			111-53대	327	111-53대	327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위 치		면적 (㎡)				
상3BL (계속)	(18,385)	2 (계 속)	111-136대	99	111-136대	99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계속)
			111-159대	61	111-159대	61		
			111-345대	105	111-345대	105		
			111-346대	47	111-346대	47		
			111-347대	101	111-347대	101		
			111-348도	46	111-348도	46		
			111-349대	189	111-349대	189		
			111-350대	417	111-350대	417		
			111-368대	150	111-368대	150		
			소계	2,048	소계	2,048		
		3	66-41제	335	66-41제	335	○ 공동개발 지정	
			111-7대	164	111-7대	164		
			111-160대	60	111-160대	60		
			111-354대	104	111-354대	104		
			111-355대	39	111-355대	39		
			111-356대	294	111-356대	294		
			111-357대	234	111-357대	234		
			111-362대	226	111-362대	226		
			111-363대	240	111-363대	240		
			111-364대	60	111-364대	60		
			111-365대	73	111-365대	73		
			111-366대	61	111-366대	61		
			111-367대	83	111-367대	83		
			111-369도	130	111-369도	130		
			소계	2,103	소계	2,103		
		4	111-149대	61	111-149대	61	○ 공동개발 지정	
			111-302대	5	111-302대	5		
			111-358대	784	111-358대	784		
			111-393대	62	111-393대	62		
			소계	912	소계	912		
		5	66-19도	15	66-19도	15	○ 공동개발 지정	
			111-149대	15	111-149대	15		
			111-303대	295	111-303대	295		
			111-359대	319	111-359대	319		
			111-393대	2	111-393대	2		
			소계	646	소계	646		
		6	66-41제	398	66-41제	398	○ 공동개발 지정	
			111-360대	123	111-360대	123		
			111-361대	276	111-361대	276		
			111-475대	226	111-475대	226		
			111-476대	85	111-476대	85		
			소계	1,108	소계	1,108		
		7	66-24잡	9,658	7	66-24잡	9,658	

가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	위 치	면적 (㎡)			
상4BL	6,739	1	111-11대	1,108	111-11대	1,108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 간 공동개발 권장
			111-299대	181	111-299대	181		
			111-311대	47	111-311대	47		
			111-396대	1,218	111-396대	1,218		
			111-397대	1,333	111-397대	1,333		
			소계	3,887	소계	3,887		
		2	111-151대	1,113	111-151대	1,113	○ 공동개발 지정	
			111-155대	1,739	111-155대	1,739		
		소계	2,852	소계	2,852	※ 필지수 : 1개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획지수2개	
상5BL	5,833	1	111-143대	2,745	111-143대	2,745	○ 공동개발 지정 - 상5BL+상6BL ※ 전체 공동개발 시에만 가능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152대	264	111-152대	264		
			소계	3,009	소계	3,009		
		2	111-147대	1,048	111-147대	1,048	○ 공동개발 지정	
			112-2도	3	112-2도	3		
			112-3대	515	112-3대	515		
		3	소계	1,566	소계	1,566	○ 공동개발 지정	
			111-73대	7	111-73대	7		
			111-74대	17	111-74대	17		
			111-144대	572	111-144대	572		
			111-145대	580	111-145대	580		
			111-269대	25	111-269대	25		
			111-270대	57	111-270대	57		
			소계	1,258	소계	1,258		
상6BL	2,519	1	111-71대	127	111-71대	127	○ 공동개발 지정	○ 가구간 공동개발 권장
			111-72대	35	111-72대	35		
			111-74대	25	111-74대	25		
			111-75대	99	111-75대	99		
			111-76대	278	111-76대	278		
			111-77대	111	111-77대	111		
			111-146대	257	111-146대	257		
			소계	932	소계	932		
		2	111-37대	80	111-37대	80	○ 공동개발 지정	
			111-71대	218	111-71대	218		
			111-72대	237	111-72대	237		
			111-146대	273	111-146대	273		
			소계	808	소계	808		
		3	111-37대	473	111-37대	473	○ 공동개발 지정	
			111-61대	97	111-61대	97		
			111-62대	63	111-62대	63		
			111-72대	26	111-72대	26		
			111-146대	37	111-146대	37		
			111-166대	83	111-166대	83		
			소계	779	소계	779		
						※ 필지수 : 6개	※ 획지수 : 3개	

주) 상5BL.상6BL 가구간 공동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수반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면적 감소시 당초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또는 대지 내 공지 등을 대체 조성하여야 함

기 정				변 경				비 고			
가 구(Block)		획 지(Lot)		가 구(Block)		획 지(Lot)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상7BL	8,936	1	111-70대	63	상7BL	8,286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79대	142							
			111-80대	281							
			111-81대	267							
			111-82대	215							
			111-83창	268							
			111-84대	274							
			111-85대	112							
			111-86대	225							
			111-89대	61			1	111-89대			61
			111-90대	73				111-90대			73
			111-91대	69				111-91대			69
			111-92대	79							
			111-93대	56							
			111-94대	112							
			111-148대	255							
			111-398대	225							
			111-423도	312							
			소계	3,089				111-423도			114
							소계	317	※ 필지수 4개		
		-	-	-			2	111-92대	79		○ 공동개발 지정
								111-93대	56		
								111-423도	95		
								소계	230		
							3	111-94대	112		○ 공동개발 지정
								111-423도	103		
								소계	215		
							4	111-58대	5		
								111-59대	227		
								111-63대	31		
								111-64대	106		
								111-65대	69		
								111-66대	340		
								111-67대	370		
								111-68대	364		

기정				변경				비 고		
가 구(BLock)		획 지(Lot)		가 구(BLock)		획 지(Lot)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가구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상7BL	8,936	2	111-58대	상7BL	8,223	111-69대	317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59대			240	111-70대			226
			111-63대			31	111-79대			142
			111-64대			106	111-80대			281
			111-65대			69	111-81대			267
			111-66대			340	111-82대			215
			111-67대			370	111-83창			268
			111-68대			364	111-84대			274
			111-69대			317	111-85대			112
			111-70대			163	111-86대			225
			111-138대			33	111-138대			33
			111-139대			34	111-139대			34
			111-140대			90	111-140대			90
			111-141대			106	111-141대			106
			111-142대			315	111-142대			315
			111-167대			256	111-148대			255
			111-193대			2	111-167대			20
			111-194도			127	111-194도			108
			111-374대			60	111-374대			60
			111-431대			78	111-398대			225
			소계			3,289	소계	5,085	※ 필지수 28개	
		3	111-162대		5	111-162대	858	○ 공동개발 지정		
			111-163대			501	111-164대			456
			111-164대			456	111-253대			185
			111-167대			31	111-431대			902
			111-193대			789				
			111-253대			189				
			111-431대			235				
			소계			2,558	소계	2,401	※ 필지수 4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허용용도(A)

○ 건축물 현황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 허용용도 지정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A1	주 1~6BL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A2	공동 1BL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A3	준 1~2BL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 (1~11Lot) 준 2BL (1~6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A3	준 1~2BL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 (1~11Lot) 준 2BL (2~6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2BL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 주거복합건축물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A4	준 3~5BL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3BL (1Lot) 준 5BL (4~5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3BL (2~3Lot) 준 4BL 준 5BL (1~3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A4	준 3~5BL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3BL (1~2Lot) 준 4BL 준 5BL (2~4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3~5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A5	준 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중 상점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A6	상 1BL, 상 4~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A7	상 2~3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A8	상 7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 주1)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 주2)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불허용도 우선 적용
- 주3)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 주4)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 주5)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 주6)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80% 미만으로 한다.
- 주7)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한한다.
- 주8)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천시관련조례를 따른다. 단,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권장용도(B)

○ 권장용도 지정을 통하여 구역특성 반영 적극 유도

도면번호	위 치	권장용도(B)
B1	주 1BL	○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다)
B2	주 2BL~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3) 불허용도(C)

○ 도시형생활주택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도면번호	위 치	불허용도(C)
C1	전 체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도시형생활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구 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비고
건폐율(%)	60%이하	50%이하	60%이하	80%이하	

주1) 일반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폐율80% 적용.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0% 적용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80%이하로 적용

(2) 용적률

○ 개발 규모와 연계한 용적률 계획 수립

위 치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반시설 의무 부담비율(순부담)	비 고
주 1BL~6BL		200%	230%	250%	-	
공동 1BL		180%	200%	250%	43.1%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1~6Lot) 준 3BL(1Lot) 준 5BL(4~5Lot)	200%	240%	-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170%	200%	-	-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300%	350%	400%	-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5BL(2~4Lot)	300%	350%	400%	5% 이상	
	준 3BL(1~2Lot) 준 4BL	300%	350%	400%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200%	240%	300%	10% 이상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2.5BL	300%	400%	500%	12% 이상	
	준 3.4BL	300%	400%	500%	-	
준 6BL		200%	240%	-	-	
상 1BL		200%	230%	250%	-	
상 2BL	1종일반주거→일반상업	200%	230%	250%	-	기준용적률은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일반상업	700%	800%	1000%	-	
상 3~6BL		700%	800%	1000%	-	
상 7BL		350%	420%	500%	7.5% 이상 (개설 부담)	

주1) 준1.2BL을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의거 상한 용적률은 300%를 초과할 수 없음(적용 용적률 : 기준 200%, 허용 240%, 상한 300%)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허용용적률 800%이하로 적용

※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적용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반시설의무부담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3-5-3 규정 적용(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상2BL.상3BL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적률(%)	비 고
~10% 미만	1,000%	
10%이상~20%미만	950%	
20%이상~30%미만	900%	
30%이상~40%미만	850%	
40%이상~50%미만	800%	
50%이상~60%미만	750%	
60%이상~70%미만	700%	
70%이상~80%미만	510%	

- 준주거지역 (준1BL.준2BL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적률(%)	비 고
~10% 미만	500%	
10%이상~20%미만	480%	
20%이상~30%미만	460%	
30%이상~40%미만	440%	
40%이상~50%미만	420%	
50%이상~60%미만	400%	
60%이상~70%미만	380%	
70%이상~80%미만	330%	
80%이상~90%미만	300%	

- 인센티브 계획

구 분	완화 항목	기준용적률 완화범위	비 고
획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규제)	기준용적률×0.0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0.05	합벽건축시 공동개발(권장) 완화기준의 50%적용
친환경 건축물	옥상조경(권장)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0.3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규제)	기준용적률×0.05	
	공개공지(권장)	(설치면적-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5%) ÷대지면적×기준용적률	건축법 제43조 규정 이상 설치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준용, 단 설치면적의 5% 공제)
	쌈지형공지(권장)	기준용적률×0.03	위치준수시, 피로티 형태로 설치시 완화기준의 50%적용
교통처리	공공보행통로 (규제)	기준용적률×0.03	

주1)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면적은 중복산정하지 않으며, 공개공지 설치시 대지 내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주2)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부채납 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 공동 1BL은 기반시설의무부담비율 준수 시에만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기 산정식을 적용
하지 않음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고
주 1BL~6BL	공동주택(아파트)	5	18	
	공동주택(아파트) 외 기타용도	-	8	
공동 1BL		5	-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2BL 준 3BL(1Lot) 준 5BL(4~5Lot)	-	4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	10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3BL(1~2Lot) 준 4BL 준 5BL(2~4Lot)	-	10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외 기타용도	-	10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2BL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준 3~5BL	-	-	10
준 6BL		-	-	4
상 1BL		-	3	6
상 2BL~3BL	주거복합, 업무시설	5	-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4BL~6BL	업무시설	5	-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7BL	특별계획구역	-	13m 이하 (100m 이하) 19m 이하 (200m 이하)	문화재 보호구역 (장도포대 지)경계

주1)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라)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

(기 정)

구 분	적 용 지 역	적용기준	비 고
건축 한 계 선	대로1-20호선 변	1m	○ 전면공지로 조성 ○ 가로경관 개선 및 보행공간 확충
	대로2-74호선 변	2~3m	
	대로3-76호선 변	2m	
	중로1-90호선	2m	
	중로1-302호선 변	1~5m	
	중로2-58, 2-110호선 변	2m	
	중로(소래)3-2호선 변	2m	
	소로(소래)2-1, 2-5, 2-6, 2-7호선 변	2m	
	소로2-9, 2-10호선 변	2m	

주1)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필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 산입됨

주2) 건축법 제46조 및 제58조 규정에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 필요할 경우 건축법상의 기준 적용

(변 경)

구 분	적 용 지 역	적용기준	비 고
건축 한 계 선	대로1-20호선 변	1m	○ 전면공지로 조성 ○ 가로경관 개선 및 보행공간 확충
	대로2-74호선 변	2~3m	
	대로3-76호선 변	2m	
	중로1-90호선	2m	
	중로1-302호선 변	1~5m	
	중로2-58, 2-110호선 변	2m	
	중로(소래)3-2호선 변	2m	
	소로(소래)2-1, 2-5, 2-6, 2-7호선 변	2m	
	소로2-9, 2-10호선 변	2m	
	소로3-10호선 변(신설)	1m	

주1)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필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 산입됨

주2) 건축법 제36조 및 제50조 규정에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 필요할 경우 건축법상의 기준 적용

(2)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구 분			내 용
저층부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출입구 높이		◦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0cm 이하
옥 상 부			◦ 냉각탑 등 건축설비 노출 불허
공동주택 및 주거 복합용도 건축물			◦ 탑상형 ◦ 획일적 패턴 지양 및 형태 및 입면상 변화로 조형성 향상

○ 건축물의 외관

구 분	내 용
재 료 및 색 채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 사용
야 간 조 명	○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의 건물외벽 및 조형물, 보도바닥 등에 조명을 투시하는 야간환경조명 설치 권장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의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

(기 정)

구 분		내 용	비 고
전 면 공 지		○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 개선 - 대로 1-20호선 변 : 1m - 대로 2-74호선 변 : 2~3m - 대로 3-76호선 변 : 2m - 중로 1-90호선 : 2m - 중로 1-302호선 변 : 1~5m - 중로 2-58, 2-110호선 변 : 2m - 중로(소래) 3-2호선 변 : 2m - 소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 2m - 소로 2-9, 2-10호선 변 : 2m	○ 건축한계선 부분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 일반상업용지(상2-1, 상2-2, 상3-1, 상7) : 4개소 ○ 준주거용지(준4-3) : 1개소	○ 위치지정
대 지 안 조 경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동주택용지 : 폭 10~15m (완충녹지)	

주1)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접한 도로 및 보도와 높이차가 없어야 함

주2) 공지내에는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의 설치를 금함

주3) 대지내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시행

(변 경)

구 분		내 용	비 고
전 면 공 지		○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 개선 - 대로 1-20호선 변 : 1m - 대로 2-74호선 변 : 2~3m - 대로 3-76호선 변 : 2m - 중로 1-90호선 : 2m - 중로 1-302호선 변 : 1~5m - 중로 2-58, 2-110호선 변 : 2m - 중로(소래) 3-2호선 변 : 2m - 소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 2m - 소로 2-9, 2-10호선 변 : 2m - 소로 3-10호선 변 : 1m (신설)	○ 건축한계선 부분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 일반상업용지(상2-1, 상2-2, 상3-1, 상7) : 4개소 ○ 준주거용지(준4-3) : 1개소	○ 위치지정
대 지 안 조 경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동주택용지 : 폭 10~15m (완충녹지)	

주1)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접한 도로 및 보도와 높이차가 없어야 함

주2) 공지내에는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의 설치를 금함

주3) 대지내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시행

나) 교통처리계획

(기 정)

○ 지구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조정

구 분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차량흐름 저해요소 제거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 대로 1-20호선 변 ○ 대로 2-74호선 변 ○ 대로 3-76호선 변 ○ 중로 1-90호선 변 ○ 중로 1-302호선 변
공공보행통로	○ 준주거용지(준4-3,4) : 1개소	○ 위치지정

주1) 간선가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변 경)

○ 지구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조정

구 분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차량흐름 저해요소 제거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 대로 1-20호선 변 ○ 대로 2-74호선 변 ○ 대로 3-76호선 변 ○ 중로 1-90호선 변 ○ 중로 1-302호선 변
공공보행통로	○ 준주거용지(준4-3,4) : 1개소 ○ 상업시설용지(상7) : 2개소	○ 위치지정

주1) 간선가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주2)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도면을 따름

다) 옥외광고물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
- 해당구역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될 예정으로 향후, 고시 사항에 따라 특정광고물 설치기준을 준수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기 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임.

경미한 사항
①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②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③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

주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준용한다.

(변 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임.

경미한 사항
①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②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③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

주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준용한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6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6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11. 10.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서창동 소로3-268호선 보행로 설치공사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L=40m, B=3m, A=318m²
- 변경: L=40m, B=3m, A=314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2.07.14.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별첨] 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주 소	비 고
1	서창동	415-3	임	478	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
1-1	서창동	415-7	임	49	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 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1-2	서창동	415--8	임	47	4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 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2	서창동	416-1	전	24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	서창동	416-4	전	6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 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2-2	서창동	416-5	전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 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2-3	서창동	416-6	전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 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3	서창동	420-2	임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4	서창동	419-2	전	136	6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4-1	서창동	419-7	전	42	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4-2	서창동	419-8	전	16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4-3	서창동	419-9	전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5	서창동	420	임	207	33	이*옥	남구 주안동 31-1 ***	
5-1	서창동	420-3	임	13	13	이*옥	남구 주안동 31-1 ***	분할측량으 로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5-2	서창동	420-4	임	15	15	이*옥	남구 주안동 31-1 ***	분할측량으 로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5-3	서창동	420-5	임	4	4	이*옥	남구 주안동 31-1 ***	분할측량으 로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6	서창동	419	전	164	85	한국토지주택공사 외2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6-1	서창동	419-4	전	54	54	한국토지주택공사 외2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6-2	서창동	419-5	전	21	21	한국토지주택공사 외2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6-3	서창동	419-6	전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외2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분할측량으 로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7	서창동	558-1	공	17,258.3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8	서창동	415	임	613	5	김*식	인천시 남동구 장아산로 ***	
8-1	서창동	415-6	임	5	5	김*식	인천시 남동구 장아산로 ***	분할측량으 로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합 계			당초		318			
			변경		314			